

야외 작업 현장에서의 위생

캘리포니아 농업의 야외 작업 현장에서 약 35만 개의 일자리가 70만 명 이상의 계절 근로자로 채워집니다.

캘리포니아 법전 제8편(T8CCR), 제3457조는 고용주가 야외 작업 현장의 수작업 근로자에게 반드시 깨끗한 식수, 화장실, 그리고 손을 씻는 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고용주가 얻는 결과는:

- 요로감염, 온열질환, 피부병 및 기타 질병에 걸리는 근로자의 감소.
- 살충제 및 비료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감소.

적용되는 작업장

제3457조는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일하는 모든 농업 시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관개 파이프 및 기타 관개 장비의 수동 조작.
- 채소, 견과, 과일, 묘목, 버섯과 같은 농작물의 경작, 제조, 재배 및 수확 중에 수작업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
- 땅에서, 움직이는 기계에서, 또는 야외 작업 현장에 있는 임시 포장 창고에서 수행하거나, 야외 작업 현장에서 농산물을 용기에 포장하는 작업.

별목 작업, 가축 사육, 또는 영구 구조물(예: 통조림 시설 또는 포장소)에서의 손으로 하는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457조에 적용되지 않는 작업에 대한 위생 요건은 제 3360조-제3368조에

주요 요구 사항 및 규정

- 깨끗한 식수는 반드시 신선하고 순수하며, 알맞게 차갑고 양이 충분해야 하는데, 기온, 습도, 그리고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에 담거나 음료수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음료수 컵이나 국자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조건이 맞다면 직원에게 개인별 물병/용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생이 보장됩니다.
- 무료이고 손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 직원에게 자주 마시도록 권장합니다: 근무 시간 내내 직원 한 명이 시간당 1 쿼트(약 1 리터) 이상.

- 20명마다 혹은 20명 이하의 직원에게, 각 성별로 나뉘어진 별도의 화장실 시설, 그리고 20명마다 혹은 20명 이하의 직원에게 최소 1개의 손 씻기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외 사항은 제 3457조를 참조하십시오.
-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은 반드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서로 가까워야 하는데, 도보로 1/4마일(4백 미터) 이내(또는 5분 이내, 이들 중에서 더 가까운 거리)여야 합니다. 지형으로 인해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2시간 미만입니다(현장으로/에서의 출퇴근 시간 포함).

- 어느 때든지, 시설에서 수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수가는 5명 미만입니다.
- 직원은 수작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지 않습니다.
- 유지관리의 표준은 반드시 공중보건위생의 관행을 따라야 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식수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갈아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더 자주 갈아야 합니다.
 - 식수의 용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 화장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 화장지를 각 화장실 칸에 있는 적절한 거치대에 제공해야 합니다.
 - 손 씻는 시설은 필요에 따라 깨끗한 물로 보충해야 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비위생적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화장실 시설의 서비스와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을 서면으로 유지해야 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반드시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식수와 위생 시설의 위치, 그리고 근무 시간 동안 이를 사용하도록 타당하게 허용되는 기회.
 - 야외 작업 현장에 관련된 보건상 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관행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의 중요성 - 특히 더운 날에.

- 필요에 따라 소변을 자주 볼 것.
- 화장실 사용 전후에 손 씻기.
- 식사 및 흡연 전에 손 씻기.



- 해당 표준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반드시 야외 작업 현장 위생 준수 양식을 법정 출두 소환 후 5년 동안에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 깨끗한 식수의 공급, 화장실 및/또는 손 씻는 공간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지 않으면, 최소 \$750.00의 조정할 수 없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에 대한 유예 기간은 하루로 한정되며, 항소를 제기해도 유예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정보는 간략한 요지만 제공하는 것이지, 제3457조의 모든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직업안전 및 보건 규정을 대신하거나 해당 규정의 법적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T8CCR을 직접 참조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규정의 범위, 자세한 내용, 예외 사항, 그리고 기타 필수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며, 제3395절의 야외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과 같은 요건을 작업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

Cal/OSHA

- 제3203조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 제3395조 야외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 제3457조 야외 작업 현장에서의 위생
- **야외 현장 농사 작업에서의 안전 및 보건**

2023년 2월



이 문서는 www.dir.ca.gov/dosh/dosh_publications에서 제공됩니다.
 이 주제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고용주는
 Cal/OSHA 상담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963-9424, 이메일
InfoCons@dir.ca.gov 또는 홈페이지 www.dir.ca.gov/dosh/consultation.html
 © 2023 캘리포니아 노사 관계부

